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297
------------	------

2021년 4월 26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김창원 의원 외 11명

나. 제안일자 : 2021년 4월 2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1년 4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창원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자동차 연료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연료가 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와 수소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2016. 12. 2일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천연가스와 수소의 연료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우도 포함하여 개정된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천연가스 및 수소의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4. 9. ~ 2021. 4. 16.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

1) 택시물류과-14818(2021. 4. 14.)

○ 제출의견 : 원안 동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신설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16.12.02.)과 수소 연료보조금('21.03.23.)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천연가스 및 수소 연료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중의 하나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천연가스와 수소 연료보조금 부정수급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제50조제5항²⁾에서는 시장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법 제51조의2³⁾에서는 실제 운행거리와 연료사용량을 허위로 청구하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는 등의 위법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에 대해서는 해당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법 제51조의4⁴⁾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도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⁵⁾, 제4조⁶⁾ 및 시행규칙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확산 방지를 위해 천연가스 및 수소 등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 도입과 함께 동 운송수단에 대한

-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주유·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4(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후략 -

7.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6)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 후략 -

연료보조금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에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유 및 LPG 이외에 천연가스 및 수소 연료보조금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법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⁷⁾ 및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⁸⁾ 신설과 함께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가 개정됨에 따라 천연가스 및 수소연료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지급정지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가 새로이 마련되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연료보조금 위반행위 단속의 필요성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유가보조금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에 “천연가스 및 수소 연료보조금 부정수급행위”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연료 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현행 유가보조금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조례〔별표〕에서 “2백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관련 규칙에서 이에 대한 포상금을 2십만원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새로이 포함되는 연료보조금 신고포상금액도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동 개정안의 부칙 중 “수소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시행일은 2021년 9월 24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관련 법령의 시행일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7) 본조신설 2016. 12. 2.

8) 본조신설 2021. 3. 23., 시행일 2121. 9. 24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가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본문의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 -----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7.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	<u>7. 유가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u><부칙신설></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의 개</u>

정규정 중 본문의 “법 제51조의4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적용한다.
